\_\_\_\_\_\_



[0664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8길33 허브원빌딩 4층, 5층 전화 (02) 523 - 0232 팩스 (02) 525 - 0224 E-mail jwkim@lawsw.co.kr (변호사 김 진 욱)

일 시 2025. 5. 27.(화)

수신인 젠더와치독

genderwatchdog@pm.me

발 신 인 **법무법인(유한)신원** 담당변호사 김진욱, 이소희, 백경태, 우지현, 정광윤, 유민주, 우홍균, 안지윤, 김채영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8길33, 허브원빌딩 4층, 5층(서초동) (전화 02-523-0232, 팩스 02-525-0224)

제 목 동국대학교 디지털영상콘텐츠대학원 관련 통지의 건

## 통지서

-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발신인은 주식회사 싸이더스(이하 "위임인"이라고 합니다)의 위임을 받아 귀 단체가 동국대학교 디지털영상콘텐츠대학원 관련 위임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다 음

\_\_\_\_\_

- 1. 귀 단체는 2025. 5. 26.경 동국대학교 디지털영상콘텐츠대학원(이하 '동국대학교'라고 합니다)의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임인 사무실이 동국대학교 내에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학교의 성폭력 사건 등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한국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하여 영화계, 경찰, 언론 등 수십 여개 기관, 업체에 발송하였습니다.
- 2. 귀 단체는 위 이메일을 통해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만을 토대로 위임인의 사무실이 동국대학교에 소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3. 그러나, 위임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u>위임인이 동국대학교 주소에 해당</u> 하는 서울 중구 필동2동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한 것은 2005. 9.경부터 2009. 9. 까지의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9.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국대학교와는 어떠한 관련이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싸이더스	2015.03.30 변경   2015.04.07 등기
로 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6 범원빌딩303호	. 변경 등기
<del>서울 강남구 논현동 164-9</del>	1996.03.09 변경 1996.03.11 등기
<del>서울 미포구 용강동 494-65</del>	1998.03.02 변경 1998.03.04 등기
<del>서울 강남구 삼성동 88</del>	2000.05.02 변경 2000.05.15 등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5-5 제일약품빌딩 6층	2004.04.29 변경 2004.04.30 등기
<del>서울 중구 필동2동 82-1</del>	2005.09.23 변경 2005.09.30 등기
<del>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82-1</del>	2005.10.05 경정 2005.10.05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헌동 70-6 트리스빌딩 10층	2009.09.01 변경 2009.09 등기

[위임인 법인등기부등본 발췌]

\_\_\_\_\_

- 4. 즉, 귀 단체가 이메일을 통해 기재한 내용은 명백하게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누구나 자유롭게 발급받아 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귀 단체는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단순히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관련 내용만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영화사로서 위임인이 쌓아 온 명예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허위 사실을 수 십 곳의 기관, 업체에 유포하였습니다.
- 5. <u>귀 단체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u>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6. 이에, 위임인은 발신인을 통해 본 통지서를 발송하는 바, <u>귀 단체가 본 통지서를</u> 수정한 즉시 2025. 5. 26.자 이메일 수신인들에게 귀사가 위임인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음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송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7. 만약, 귀 단체가 본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항에 따른 위임인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임인은 귀 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귀 단체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위임인 차원에서의 언론 제보 등을 통해 귀 단체로 인해 훼손되고 실추된 영화사로서의 위임인의 명예와 이미지 회복에 전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 8. 본 건과 관련하여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백경태 변호사 (02-523-0232, ktpaek@lawsw.co.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_\_\_\_\_

2025. 5. 27.

## 위 발신인 **법무법인(유한)신원**

담당변호사 김 진 욱



이 소 희



백 경 태



우 지 현



정 광 윤



유 민 주



우 홍 균



안 지 윤



김 채 영

